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국세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상목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납세자가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전자송달 서류의 미열람 횟수를 늘리고,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「국세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국세청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위촉배제 요건 및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17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회”를 “3회”로, “두”를 “세”로 한다.
제20조제2항 중 “법 제39조제2호에서”를 “법 제39조제2호 및 제3호에서”로, “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”을 “주주,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또는 법 제39조제3호에 해당하는 조합원”으로 한다.

제53조제8항제2호 중 “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,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”을 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”을 “제17조, 「공인회계사법」 제48조 또는 「변호사법」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(건축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5조의2제3항제3호 중 “제17조 또는 「관세사법」 제27조에 따른 징계처분”을 “제17조, 「관세사법」 제27조, 「공인회계사법」 제48조 또는 「변호사법」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(건축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3조의17제6항제2호 중 “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,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”을 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”을 “제17조, 「공인회계사법」 제48조 또는 「변호사법」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(건축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5조의4제6항 본문 중 “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”를 “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4호의2까지의 규정”으로, “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”을 “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200만원”을 “1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거부금액	지급금액
5천원 이상 5만원 이하	1만원
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	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
125만원 초과	25만원

제65조의4제19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민간위원 및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에 대한 적용례) 제53조제8항, 제55조의2제3항제3호 및 제63조의1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민간위원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하는 경우 제65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

따른다.

② 이 영 시행 전 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급되는 포상금이 제65조의4제6항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연간 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액은 연간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의2(전자송달의 신청) ① ~ ④ (생략) 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<u>2회</u>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<u>두</u>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	제6조의2(전자송달의 신청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3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) ① (생략) ② <u>법 제39조제2호에서 “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</u>	제20조(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법 제39조제2호 및 제3호에서</u> ----- ----- <u>주주,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또는 법 제39조제3호에</u> ----- <u>해당하는 조합원</u> ----- -----.

제53조(국세심사위원회) ① ~ ⑦ (생략)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. 1. (생략) 2.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,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. 「세무사법」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. (생략) ⑨ ~ ⑮ (생략) 제55조의2(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) ①·② (생략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. 1.·2. (생략) 3. 「세무사법」 제17조 또는 「관세사법」 제2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	제53조(국세심사위원회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----- ----- ----- 3. ----- 제17조, 「공인회계사법」 제48조 또는 「변호사법」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(견책은 제외한다)----- -- 4. (현행과 같음) ⑨ ~ ⑮ (현행과 같음) 제55조의2(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제17조, 「관세사법」 제27조, 「공인회계사법」 제48조 또는 「변호사
--	--

이 지나지 않은 사람	<u>법」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</u> <u>(견책은 제외한다)</u> ----- --
제63조의17(납세자보호위원회) ① ~ ⑤ (생략)	제63조의17(납세자보호위원회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.	⑥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최근 3년 이내에 <u>해당 위원회</u> <u>를 둔 세무서, 지방국세청 또</u> <u>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</u>	2. ----- <u>국세청과 그</u> <u>소속기관</u> ----- -----
3. 「세무사법」 <u>제17조에 따른</u> <u>징계처분</u> 을 받은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않은 사람	3. ----- <u>제17조, 「공인</u> <u>회계사법」 제48조 또는 「변</u> <u>호사법」 제90조에 따른 징계</u> <u>처분(견책은 제외한다)</u> ----- 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⑦ ~ ⑮ (생략)	⑦ ~ ⑮ (현행과 같음)
제65조의4(포상금의 지급) ① ~ ④ (생략)	제65조의4(포상금의 지급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삭제	
⑥ <u>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</u> <u>는 제4호에</u>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의 결제	⑥ <u>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</u> <u>제4호의2까지의 규정</u> ----- -----

· 발급을 거부하거나 <u>사실과 다</u> <u>르게 발급한 금액(사실과 다르</u> <u>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</u> <u>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. 이하</u> <u>이 항에서 “거부금액”이라 한</u> <u>다)에 따라</u> 다음의 금액을 포상 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 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,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 상금은 연간 <u>200만원</u> 을 한도로 한다.	----- <u>신용카드 매출전</u> <u>표 및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</u> <u>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</u> <u>수증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</u> <u>에 해당하는 금액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<u>100만원</u> ----- -----.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거부금액</th><th>지급금액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천원 이상 5만원 이하</td><td>1만원</td></tr> <tr> <td>5만원 초과 <u>250만</u> 원 이하</td><td>거부금액의 100분의 2 0에 해당하는 금액</td></tr> <tr> <td><u>250만원</u> 초과</td><td>50만원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거부금액	지급금액	5천원 이상 5만원 이하	1만원	5만원 초과 <u>250만</u> 원 이하	거부금액의 100분의 2 0에 해당하는 금액	<u>250만원</u> 초과	50만원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거부금액</th><th>지급금액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천원 이상 5만원 이하</td><td>1만원</td></tr> <tr> <td>5만원 초과 <u>125만</u> 원 이하</td><td>거부금액의 100분의 2 0에 해당하는 금액</td></tr> <tr> <td><u>125만원</u> 초과</td><td><u>25만원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거부금액	지급금액	5천원 이상 5만원 이하	1만원	5만원 초과 <u>125만</u> 원 이하	거부금액의 100분의 2 0에 해당하는 금액	<u>125만원</u> 초과	<u>25만원</u>
거부금액	지급금액																
5천원 이상 5만원 이하	1만원																
5만원 초과 <u>250만</u> 원 이하	거부금액의 100분의 2 0에 해당하는 금액																
<u>250만원</u> 초과	50만원																
거부금액	지급금액																
5천원 이상 5만원 이하	1만원																
5만원 초과 <u>125만</u> 원 이하	거부금액의 100분의 2 0에 해당하는 금액																
<u>125만원</u> 초과	<u>25만원</u>																
⑦ ~ ⑮ (생략)	⑦ ~ ⑮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
⑰ <u>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</u> <u>에</u>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 <u>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</u> <u>할 수 있다. 다만, 포상금으로</u> <u>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</u> <u>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, 동일</u> <u>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</u> <u>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</u>	<삭제>																

다.		
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은 금액	지급금액	
5천원 이상 5만원 이하	1만원	
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	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	
250만원 초과	50만원	
㉔ ~ ㉖ (생략)		㉔ ~ ㉖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	
연락처	(044) 215 - 4151